(재)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1023-196호

「2025년 기술 및 경영혁신 인증지원사업」 모집 공고

대구지역의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을 통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대구시가 지원하는 「2025년 기술 및 경영혁신 인증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10월 23일

(재)대구테크노파크 원장

1 지원개요

□ **지원목적**

ㅇ 기술 및 경영혁신형 인증지원 확보를 통한 지역 우수기업 발굴 및 확대

ㅇ 지역 유망 중소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을 통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

□ **지원대상** : 기술 및 경영혁신 인증획득을 희망하는 **대구지역 내 본사를 둔 중소기업**

※ 인증서에 반드시 대구광역시 내 주소가 기재되어야 지원금 신청 가능

□ **지원규모 : 총 20개사 내외**

※ 각 인증별 등록요건을 미충족하거나 지원제외 대상일 경우,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

□ **지원기간** : 지원여부 통보일 ~ 2025.12.5.(금)까지

□ **지원내용**

ㅇ 벤처기업/이노비즈/메인비즈 신규 및 연장 수수료 지원

ㅇ 기업별 인증 관련 1:1 맞춤형 컨설팅 지원

2 상세 지원내용

□ 인증획득 수수료 지원

○ 벤처기업/이노비즈/메인비즈 신규 및 연장인증(기업당 1개)

○ 인증수수료의 70%까지 지원(기업당 최대 40만원)

인증구분	인증유형	수수료 (VAT제외금액)	지원금액 (수수료 70%)	비고
벤처기업	벤처투자유형	150,000원	**105,000원**	
	연구개발유형	350,000원	**245,000원**	
	혁신성장유형	450,000원	**315,000원**	
	이노비즈연계	300,000원	**210,000원**	이노비즈 인증후 6개월이내 신청
	예비벤처	200,000원	**140,000원**	예비벤처 확인후 1년이내 신청
	예비벤처유형	350,000원	**245,000원**	
이노비즈	신규	700,000원	**400,000원**	
	연장	400,000원	**280,000원**	
메인비즈	신규	500,000원	**350,000원**	
	연장	400,000원	**280,000원**	

※ 기업이 인증수수료를 선결제하고, 인증완료 후 지원금 신청

※ 지원여부 통보일 이전에 완료되었거나 '25.12월 이내 인증 필수(지원금은 26년도에 지급될 수 있음)

□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

○ 지원기업으로 선정 후, 대구 TP에서 전문가 1:1 매칭

○ 인증별 평가지표 분석 및 기술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자문

○ 인증별 신청방법 및 현장평가 준비사항 안내

○ 기업당 최대 2회까지 컨설팅 가능

※ 컨설팅 비용은 대구TP에서 컨설팅 전문가에게 직접 지급

□ 추진일정

※ 컨설팅 비용은 대구TP에서 컨설팅 전문가에게 직접 지급

3 신청 및 제출방법

□ 공고 및 신청서 접수

○ 접수기간 : 2025. 10. 23.(목) ~ 11. 5(수) 14:00까지

○ 공고방법 :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dgtp.or.kr) 공고

○ 접수방법 : 신청서(붙임. 양식) 작성 후 이메일 제출

*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

** 이메일 제목 : **2025 인증지원사업 신청_기업명** 작성하여 송부

***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송부

□ 제출서류

구 분	서류명	비 고
공동 제출서류	• 신청서 1부	• 붙임. 양식참조
	• 사업계획서 1부	• 붙임. 양식참조
	•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동의서	• 붙임. 양식참조
	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	
	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•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추가제출
	• 2024년 표준재무제표 1부	
	• 국세/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	• 증명서 유효기간은 '25.11.3 이후
해당시	• 회사소개자료 및 인증 서류 사본 각 1부	• 해당시

※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

□ 접수 및 문의처

○ 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센터

- ☎) 053-757-4186, E-mail) yuju@dgtp.or.kr

4 지원(신청) 제외대상

※ 제외대상 안내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(기관)에게 있음

□ 신청과제가 기 지원되었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·중복이 확인될 경우

□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제재를 받고 있거나,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 중인 경우

□ 신청기업(기관) 중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

-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·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,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-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,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절"인 경우, **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**

  ※ 자본전액잠식이란, 결산재무제표에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경우(단,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예외)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3 및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
-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
-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,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
- 그 외 현행 법령위반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, 소송,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공공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

판단되는 경우

□ 협약 이후라도 지원대상 제외에 해당됨을 발견 즉시 사업비 전액을 환수

□ 지원대상 제외에 신청기관, 신청기관장,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되며, 주관이 아닌 기관 또는 책임자가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가능

□ 과제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해 “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” 의 연구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